

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0일
------	-----	----------

기관·단체명

대표자	생년월일
소재지	전화번호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2. 농어촌산업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·연구, 평가,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 3. 정관(법인에 해당) 또는 규약 등 설립 근거 서류 4.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등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